

「방산기술혁신 펀드(2차)」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방산기술혁신 펀드(2차)』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개요

항 목	세부내용		
위탁운용 금액 및 선 정 운용사수	○ 총 200억원		
	선정 운용사 수	출자금액	최소결성금액
	1개사	200억원	400억원
출자대상 투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상기와 유사한 목적의 국내법상 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포함 - 공고일 시점의 현행 법규에 따른 적법·유효한 투자기구일 것을 요하되, 펀드 결성 시 별도 협의 ※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 건 펀드의 운용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가능 		
운 용 사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의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국내 설립 법인 ○ 공동 운용(CO-GP)시에는 제안펀드 운용상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운 용 사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공개모집 공고 등을 통해 한국성장금융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한국성장금융 : www.kgrowth.or.kr(출자사업공고) 		
접수일시 및 심사결과 발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 2023년 10월 20일(금) 16:00까지 ○ 발표 : 2023년 11월 중 ※ 심사결과 발표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펀 드 결성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후 3개월 이내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2. 주목적 투자대상 및 의무비율

□ 국내 중소·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을 대상으로 투자기간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펀드의 투자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분리되는 중소·중견기업은 투자대상에 포함 가능

□ 주목적 투자대상

○ 아래 표의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주목적 투자는 신규 투자* 방식에 한하여 인정함

* 기업에 자금이 유입되는 방식(유상증자, 메자닌 투자 등)으로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근거 법령에서 허용하는 방식이어야 함

주목적 투자대상 및 의무투자비율

① 개방형 기술혁신^{주1)}을 추진하는^{주2)} 방위산업 기업^{주3)} 또는 방위산업 진출 희망기업^{주4)}에 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

- 단, 개방형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위산업 기업에 결성금액의 10% 이상 투자

② 우수기술기업^{주5)}에 투자집행금액의 80% 이상 투자

주1) 기술 이전, 공동 R&D, 기술 사업화 등 기업 간의 기술 협력 활동(기술 구매, 기술 판매, 연구 위탁 계약, 합작 벤처 설립 및 투자, 기업 인수 등) <별첨1 참고>

주2) 투자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이력이 있거나 투자일 이후 6개월 이내 시행하는 경우

주3)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1.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기업
2. 방위산업체가 아닌 일반업체로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기업
3. 방위산업체의 협력사(방위산업체의 확인 및 납품실적 필요)
4. 정부 및 유관기관의 방위산업 육성지원 관련 사업 선정기업 <별첨2 참고>
5. 해외 군수품·무기체계 관련 수출 실적 보유기업
6. 국내·외 방위산업 관련 R&D 또는 프로젝트 수행 기업

*1호 및 2호는 투자일 기준, 3호 내지 6호의 실적 인정 기간은 투자일 기준 3년 이내로 함

주4) 투자 시 방위산업 진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투자 이후 방위산업 기업에 해당하게 될 경우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주목적 투자로 동시 인정 <별첨3 참고>

주5)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 6등급(TI6) 이상이거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발명진흥법」에 따른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

3. 주요 출자조건

항 목	내 용											
최소결성 금액	○ 400억원 이상											
운용사 출자 비율	○ 약정총액의 1%이상 *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는 각각 약정총액의 의무출자 비율 이상을 출자 하여야 하며,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 * 운용사가 「상법」 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운용인력 출자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 ※ 운용사 우선손실충당 설정 의무 없음											
존속기간	○ 펀드 결성일(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투자기간	○ 펀드 결성일(성립일)로부터 4년 이내											
납입방식	○ 수시납(Capital call) 또는 분할납											
운용 보수	○ 관리보수 : 펀드 최종 결성규모에 구간별 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500억원</th> <th>≤1,000억원</th> <th>≤1,500억원</th> <th>1,500억원<</th> </tr> </thead> <tbody> <tr> <td>결성(성립)일~2년 (약정총액 기준)</td> <td rowspan="2">2.2% 이내</td> <td rowspan="2">1.7% 이내</td> <td rowspan="2">1.2% 이내</td> <td rowspan="2">1.0% 이내</td> </tr> <tr> <td>2년~만기 (투자잔액 기준)</td> </tr> </tbody> </table> * 다른 방식의 관리보수 제안 시 상기 표를 통해 산출된 관리보수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IRR 6%)* 초과시 초과수익의 20% 이내 지급 * 기준수익률은 6% 이상으로 자율제안할 수 있으며, 타 출자자 대비 낮지 않아야 함 ※ 보수 체계는 선정 시 상기 범위 내에서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구 분	≤500억원	≤1,000억원	≤1,500억원	1,500억원<	결성(성립)일~2년 (약정총액 기준)	2.2% 이내	1.7% 이내	1.2% 이내	1.0% 이내	2년~만기 (투자잔액 기준)
구 분	≤500억원	≤1,000억원	≤1,500억원	1,500억원<								
결성(성립)일~2년 (약정총액 기준)	2.2% 이내	1.7% 이내	1.2% 이내	1.0% 이내								
2년~만기 (투자잔액 기준)												
핵심 운용 인력	○ 핵심운용인력 총 2인 이상* 참여 * 제안펀드 규모 및 운용 전략, 운용인력의 경력, 역량 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인원으로 제안 ※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별로 1인 이상 인력이 참여하여야 함 ○ 핵심운용인력은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근거법령에서 요구하는 펀드 운용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자격요건 - 전체 핵심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이 4년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함 ○ 핵심운용인력 중 1인은 투자기간 만료 또는 주목적 투자 완료 전에는 신규로 결성되는 다른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겸임을 제한함* * 위탁운용사 선정 통지일로부터 겸임 제한 적용 ○ 핵심운용인력이 투자기간 중 본 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으로											

	<p>참여할 수 있는 펀드의 개수는 4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펀드의 출자약정액 합산금액**은 1,0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p> <p>* 투자기간 만료 또는 의무 투자 달성 완료(해당 펀드에 부여된 모든 의무투자를 충족해야함) 펀드는 미포함</p> <p>** 출자약정액 합산금액 = ∑(각 펀드의 약정총액/각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수)</p> <p>○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에 기재</p>
출자자 제한	<p>○ 출자자는 국내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기 사항은 한국성장금융과 사전 협의 하에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정책자금(정책기관 및 정책성 펀드)이 참여하는 경우 - 해외출자자(해외출자자의 국내법인 포함)가 참여하는 경우 - 개인출자자가 참여하는 경우
수탁 회사	<p>○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p> <p>○ 펀드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p> <p>○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p>
회계 감사인	<p>○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p>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p>○ 펀드 전자보고시스템 사용 의무</p> <p>○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p> <p>○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p>
기타	<p>○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출자금액, 보수 등)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 예정</p> <p>○ 결성과정에서 출자조건(보수구조 등) 등 공고 조건에 대한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펀드 조성목적 및 주요 출자조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p> <p>○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최종시행규정(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 등을 준수해야 함</p> <p>○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 결성 과정에서 한국성장금융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p>

4. 선정 배제, 취소 기준

□ 선정 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미해소),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 감독 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주의 또는 본 펀드 운용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 ※ 다만, 법령위반 등 제재내역이 본 펀드 운용부서, 운용사의 임직원 등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는 선정 배제 사유에서 제외 가능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사 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국성장금융의 운용 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선정 취소

- 펀드의 최소결성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한국성장금융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정관)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선정 취소 발생 시, 차순위 후보자로 위탁운용사 선정 가능

5. 제재 사항 및 기타

□ 제재 사항

- 결성시한(협약에 의한 연장기한 포함)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정관)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투자기간 종료일 또는 펀드 해산일로부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
-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고,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특히,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함
-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접수 후 한국성장금융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2023. 6. 30.**로 하며,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 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

6.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제안심사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일자	내용	비고
2023.09.20.(수)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홈페이지
2023.10.20.(금)	제안서 접수	~ 16:00
2023. 11월 중	최종 선정	개별 통지
선정일로부터 3개월	펀드 결성 완료	

※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방법 및 출자 설명회

□ 지원방법

- 출자자가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 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당일 접수시간 내 제출

*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관련 양식은 온라인 출자설명회 일자까지 별도 공지 예정)

- 제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8부)를 제출
- 분량 : 20페이지 이내(제출 방법 및 양식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출자 설명회

- 일시 : 2023년 9월 26일(화) 오후 2시

- 장소 : 한국성장금융 대강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SK증권빌딩 11층)

* 출자 설명회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 출자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운용사는 2023년 9월 22일(금)까지 하기(8. 접수처 및 문의방법 참고) 메일주소로 참석인원 관련 정보(참석 인원수, 성함, 직급등)를 송부하여야 하며, 운용사별 참석인원은 4명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출자 설명회 외 별도의 대면 또는 비대면(온라인) 출자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을 예정

8. 접수처 및 문의방법

- 접수처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SK증권빌딩 11층)

- 문의처 : 한국성장금융 산업금융1팀 (02-2090-9185)
E-mail : hjlee@kgrowth.or.kr

2023년 9월 20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별첨1

개방형 기술혁신 유형 및 예시

□ 개방형 기술혁신 유형

유형	내용	비고	
내향형 개방	기술 구매	금전적 계약을 통해 외부의 기술을 구매	특허권 라이선싱이 대표적
	공동 연구	외부 기관(주로 대학)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보통 지적재산권의 공유를 수반
	연구 계약 (위탁 연구)	특정 요소기술 확보나 시험평가를 위해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지적재산권의 공유는 없으며, 신약 개발에서 CRO가 대표적
	장기지원협약	대학 등과 연구성과 사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대규모 연구비를 일괄 지원	보통 발생하는 특허의 지분이나 우선 실시권을 기업이 얻는 조건
	합작벤처설립	타사와 공동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특정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	합작 벤처는 제품 개발 완료 후 매각/인수를 통해 소멸되기도 함
	벤처 투자	신기술 탐색이나 우선 실시권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에 지분을 투자	다른 벤처캐피탈과 협력하거나 직접 벤처캐피탈을 설립
	기업 인수	유망 기술의 도입을 위해 기술을 보유한 기업(주로 벤처)을 인수	시스코, 피자사 등이 이 방식을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 기업
	해결책 공모	기술적 문제를 인터넷 등을 통해 전문가들에게 공개하고 해결책을 공모	NineSigma 등 전문 사이트 활용
	사용자 혁신	사용자에게 개발 툴을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신제품 개발	의료기기, 게임, 완구 등이 대표적
	집단지성 활용	다수 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하나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 개선 추구	기술의 지적 소유권을 불인정, open source S/W가 대표적
외향형 개방	기술 판매	자사의 기술을 판매하여 타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업화를 모색하고, 로열티 수입을 통해 수익 창출을 극대화	기업 내에 사장된 휴면 특허를 파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기술 판매를 목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음
	분사화 (Spin-off)	자사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로는 사업화가 어려운 기술에 대해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화를 추진	미활용 기술의 사업화, 사업 다각화 모색, 신성장동력 사업 창출 등이 목적

* 출처 : 개방형 기술혁신시스템 구축 방향(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 개방형 기술혁신 예시

항목	예시
기술이전 / 기술사업화	민간 또는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아 신기술 개발, 기술 고도화 등에 활용 - 국방기술 등을 이전받아 무기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위산업 기업 -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사업화하여 방위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술이전·사업화 정보 서비스 제공기관은 NTIS 참고 (https://www.ntis.gov/k/motrend/techinfo/service.do)
공동 연구개발	국내·외 방위산업 관련 공동 연구개발 또는 컨소시엄 형태의 프로젝트 참여 - 방위산업 체계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공동 R&D, PoC 등의 협업
지분투자 / M&A 등	기업 간 협업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SPC 설립, 지분투자, M&A

※ 상기는 개방형 혁신 유형 중 일부 항목의 예시일 뿐 해당 내용에 한하지 않음

별첨2**방위산업 육성지원 관련 사업**

-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 육성지원 관련 사업의 대상기업의 경우 방위산업 기업으로 인정

방산육성지원 관련 사업 목록	대상기업
방산혁신기업 100 지원사업	■ 선정기업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 과제 참여기업
국방벤처 지원사업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포함)	■ 과제 참여기업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 과제 참여기업
제조로봇 도입 지원제도	■ 산업부 선정기업 중 방위사업법 상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 향후 신규 도입되는 방위산업 육성지원 관련 사업 중 주목적 투자분야에 부합하는 경우 추가 인정 가능(성장금융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검토를 통해 인정 여부 판단)

- 방위산업 진출 계획서(이하 '계획서') 상 기재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충실히 노력하였을 경우, 방위산업 기업*으로 진출하지 못한 경우도 주목적 투자로 인정 가능

* 본 펀드 공고문 상의 방위산업 기업 정의를 준용

- 기업이 계획서에 작성한 방위산업 연계·진출을 위한 구체적 시행 방법에 관한 노력 이행 여부
- 상기 내용과 관련한 증빙 구비 여부

[참고] 방위산업 진출 희망기업 주목적 투자 인정 여부 예시

계획서 항목	상 기재 내용 시행방법	이행내역	확인 가능 증빙	여부
방산 매출 실현	방위산업 신규 거래처 발굴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 방산 관련 전시회 참가, 체계기업 협력 제안 등 구매처 발굴을 진행하였으나 시장 진입에 실패	- 투찰내역, 전시회·구매상담회 참가내역, 협력 제안 내역 등	인정
방산 진출 기반 구축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	- 참가 희망했던 지원사업에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였고, 이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신청	- 지원사업 신청 내역, 보완 및 재신청내역 등	인정

※ 주목적 투자 인정 여부는 펀드별 반기·온기 보고내역 및 투자금 실사 결과 자료 등을 토대로 성장금융이 검토하며, 검토 과정에서 방위산업 연계 가능 기술 여부 등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협조를 통해 진행함

- 투자 이후 방위산업 진출 희망기업이 방위산업 기업으로 진출에 성공한 경우,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주목적 투자도 중복 인정